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 의원)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가.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관리를 위한 마리나정거장 지정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외곽시설을 갖춘 항만, 항포구 등을 마리나정거장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2조제2호의2, 제10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마리나정거장"이란 마리나선박의 계류·보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마리나정거장 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마리나선박의 계류·보관 및 해양레저를 위하여 개발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마리나정거장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곽시설을 갖춘 항만, 항포구 등을 마

	리나정거장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마리나정거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된 마리나정거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최근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소규모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50개소 조성이 국정과제(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로 선정되었으나, 과제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신속한 조성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촌・어항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에 따라 조성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등이 현행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정거장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등을 현행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어촌・어항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조성된 마리나 계류·보관 등 시설을 "마리나정거장 시설"로 규정하고(안 제2조제2의2호),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갖춘 곳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안 제10조의2)하여 "마리나정거장"이라는 공간적 개념(안 제2조 제1의2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1]

마리나항만관리규정 적용 대상이 "마리나정거장 시설"로 확대되어(안 제24조제1항) 마리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기대됨.

1) 다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마리나 정거장'은 소규모 마리나선박 계류·보관 시설로 과거에 이미 지원한 '어촌 마리나역'('15~'18년, 13개소 조성 지원)과 사실상 동일 개념에 해당하고, 마리나정거장 지정·고시 대상이 항만, 항포구 등임을 감안하면 「어촌・어항법」 등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 공공기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관련 조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u>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그런데,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미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5곳 중 4곳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1곳은 민간인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어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2)]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및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과거에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추진현황
1	**울진 후포** (울진군)	ㅇ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ㅇ면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ㅇ규모 : 계류시설 307척(해상 157척, 육상 150척) ㅇ총사업비 : 669억원(국비 259, 도비 64, 군비 346) ㅇ사업기간 : 2015~2020(기반시설) / 2021~2022(건축물)	· 협약체결('15.4.) · 사업계획 승인 및 항만구역지정('15.10.) · 사업착공('16.6.) · 1단계 기반시설, 매립 및 부지 조성공사 준공('19.11.) **· 2단계 건축물 등 조성 완료('22.8.)**
2	**창원 진해명동** (창원시)	ㅇ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ㅇ면적 : 112,139.2㎡(수역 69,013㎡, 육역 43.126.2㎡) ㅇ규모 : 계류시설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 ㅇ총사업비 : 840억원(국비 284, 지방비 556) ㅇ사업기간 : 2014~2024	· 협약체결('16.11.) · 사업계획 승인 및 항만구역지정('18.10.) · 사업계획 및 항만구역변경('19.9.) · 실시계획 승인('19.12.) **· 1단계 기반시설 공사 중**
3	**안산 방아머리** (안산시)	ㅇ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 ㅇ면적 : 사설면적 144,700㎡(수역 76,243㎡, 육역 68,457㎡) ㅇ규모 : 계류척수 312척(육상 144, 해상 168) ㅇ총사업비 : 1,811억원(국비 294, 지방비 1,517) ㅇ사업기간 : 2020~2027	· 협약체결('16.2.) · 매립기본계획 반영('19.8.) · 사업계획 승인('20.4.) **· 관계기관, 실시설계 협의 중**
4	**여수 웅천** (여수시)	ㅇ위치 : 전남 여수시 웅천동 전면 해상 ㅇ면적 : 164,890㎡(수역 95,865㎡, 육역 69,025㎡) ㅇ규모 : 계류시설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 ㅇ총사업비 : 1,165억원(국비 290, 지방비 875) ㅇ사업기간 : 2020~2027	· 협약체결('16.2.) · 사업계획 및 항만구역지정신청('18.11.) · 사업계획 승인('20.6.)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20.11.) · 실시계획 승인('23.9.) **· '25. 착공예정**
5	**부산 해운대** (삼미컨소시엄)	ㅇ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747번지 일원 ㅇ면적: 141,120㎡(수역 90,558㎡, 육역 50,562㎡) ㅇ규모: 계류시설 250척(해상 175척, 육상 75척) ㅇ총사업비: 852억원(국비 274, 민간 578) ㅇ사업기간 : 2024~2028	· 협약체결('16.11.) · 사업계획서 제출('19.12.) **· 사업계획 검토 중**

다. 마리나항만시설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마리나정거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 ② ----------시・도지사----------. ③ 시・도지사는----------.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4조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3]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요청 사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그런데, 2023년 2월 국무조정실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개발 이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특화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제·개정 등 관리·감독권을 시·도에 이양하고자 하는 과제가 추진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행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하려는 것으로,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마리나항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취지임.

---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그 관리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 관리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경우 각 지역 사정에 맞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운영주체 현황

권역		개소	대상항만(고시)	운영주체
수도권	경기	3	김포터미널('11.1.6.),	워터웨이플레스(K-WATER)
			제부('22.11.11.),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안산 방아머리('22.6.27.)	미정(사업 준비중)
	인천	1	왕산('15.7.31.)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전남권		2	목포('14.6.30.),	목포마리나(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 웅천('22.6.17.)	미정(사업 준비중)
경남권		2	충무('14.6.30.),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진해명동('23.5.30.)	미정(공사중)
경북권		1	후포('16.4.8.)	울진군
제주권		1	중문('15.4.1.)	퍼시픽리솜
합 계		**10**		

□ 참고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3년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되었고,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3년 10월 31일 공포되었는데[4], 마리나업의 등록・승계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권한과 제도 보강을 위하여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개정

4) 2025. 5. 1. 시행예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표] 마리나항만법 규정 관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구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개정안	비고
마리나업의 등록·승계 (28조의2 및 28조의3)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25. 5. 1. 시행 예정
휴업·폐업 신고 (28조의4)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등록사업자 의무 (28조의5)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시정명령, 등록취소 (28조의6 및 28조의7)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사·확인 등 (제33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과태료 부과 (제41조)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리나항만관리규정 (안 제24조)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운항구역 등 제한 신설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기상악화 등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3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13(영업의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 ----------.

(2) 검토의견

□ 개정안 제28조의13은 기상악화,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마리나선박운항에 위험이 존재할 경우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5)]

이와 더불어 안 제28조의7제10호는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명령 등을

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5. 5. 1. 시행예정이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에서 등록취소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개정될 예정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대하여, 안 제39조의2는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선박 운항여건 악화에 따른 마리나선박의 사고위험을 고려한 영업의 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 제한에 대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등록취소와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유사 업종 간 안전규정을 비교할 때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출항통제 및 영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첨부1 참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지난 5년간 사망 등 중대 해양사고는 없었으나, 선박 부유물 감김 등 연평균 1.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및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마리나선박의 운항에 위험이 예상될 때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